55. 아황산가스 노출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호흡곤란과 어지러움

- 1. 역학조사 배경: (주)○○유리 소속 근로자 고○○이 2005년 1월 22일 작업 중 호흡 곤란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H의원을 거쳐 분당 J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다. 근로자 고○○은 (주)○○유리에서 작업 중 사용하는 아황산가스(SO₂) 등에 노출되어 위 증상들이 발생하였다고 2005년 1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산재보상보험 요양신 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. 이에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2005년 3월 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질병(증상)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.
- 2. 역학조사 방법: 작업자들의 아황산가스 노출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황산가스를 사용하는 강화(열처리)로에서 작업자의 호흡기 부위까지 1 m 이내로 아황산가스의 경로 (pathway)에 해당되는 3개 지점(판유리를 투입하는 Loading 지점, 열처리된 판유리를 회수하는 Unloading 왼쪽 및 오른쪽 지점)과 아황산가스가 분사되는 강화로의 옆 통로쪽 및 벽쪽 각각 1개 지점 등 총 5개 지점에서 1시간 동안의 공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를시간함수로 평가하였다. 제1공장의 강화로 1호기에서 정상 작업 중 5 ml/min의 유량으로 아황산가스를 강화로 내부로 분사시키면서 15분, 30분, 40분, 50분, 60분 째 공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가 작업장 안에 축적되어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, 강화로 옆 벽쪽 지점에서 15분 째 포집한 시료에서 최고 0.059 ppm이었다.
- 3. 역학조사 결과 : 근로자 고○○은 (주)○○유리에 입사 전인 2004년 2월 및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지난 3월에 과호흡(hyperventilation) 또는 발작(convulsion)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였다. 과호흡은 스트레스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나타날 수 있으며, 심하면 동맥혈가스분석이나 폐기능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. 발작 역시정서적 원인뿐만 아니라 뇌종양이나 간질 등 뇌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, 분당]병원 입원 중에 실시한 뇌 자기공명영상 및 뇌파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다. 따라서 과호흡이나 발작 등 과거 병력이 2005년 1월 22일 나타난 증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. 재직 중이던 2004년 10월에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으로 판정받았고, 2005년 1월 22일 H의원 및 분당J병원에서 측정한 혈압도 높았다. 이에 분당 J병원에서는 근로자 고○○의 증상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 척수액 천자검사, 뇌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특이소견이 없어 고혈압 합병증에 의한 증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.
- **4. 역학조사 결론** : 역학조사를 통한 작업 재현에서도 확인되었듯이 (주)○○유리의 정상 작업 중에는 건강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아황산가스 노출이 일어날 수 없지만, 근로자 고

○○의 질병이 발생한 2005년 1월 22일 오전 작업 중에는 근로자 고○○ 및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달리 아황산가스가 고농도로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더구나 근로자 고○○의 당일 중상 및 분당J병원의 검사 소견 역시 아황산가스에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, 근로자 고○○의 질병을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. 따라서 2005년 1월 22일 갑자기 발생한 근로자 고○○의 질병이 당일 아황산가스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